별표3

「기사용화장품원료목록」조정 설명

| **순번** | **원료순번** | **원료 중문명칭** | **조정 전 내용** | **조정 후 내용** | **조정날짜** |
| --- | --- | --- | --- | --- | --- |
| 1 | 「목록」 Ⅰ：01371 | 滨海剌芹（ERYNGIUM MARITIMUM）提取物 | 중문명칭：滨海剌芹（ERYNGIUM MARITIMUM）提取物 | 중문명칭：滨海刺芹（ERYNGIUM MARITIMUM）提取物 | 2025년6월23일 |
| 2 | 「목록」 Ⅰ：01372 | 滨海剌芹（ERYNGIUM MARITIMUM）愈伤组织培养物滤液 | 중문명칭：滨海剌芹（ERYNGIUM MARITIMUM）愈伤组织培养物滤液 | 중문명칭：滨海刺芹（ERYNGIUM MARITIMUM）愈伤组织培养物滤液 | 2025년6월23일 |
| 3 | 「목록」 Ⅰ：01840 | 淡竹叶（LOPHATHERUM GRACILE）叶粉 | INCI명칭/영문명칭：*LOPHATHERUM GRACILE LEAF POWER* | INCI명칭/영문명칭：*LOPHATHERUM GRACILE LEAF POWDER* | 2025년6월23일 |
| 4 | 「목록」 Ⅰ：05448 | 瞿麦（DIANTHUS SUPERBUS）粉 | INCI명칭/영문명칭：*DIANTHUS SUPERBUS POWER* | INCI명칭/영문명칭：*DIANTHUS SUPERBUS POWDER* | 2025년6월23일 |
| 5 | 「목록」 Ⅰ：06181 | 何首乌（POLYGONUM MULTIFLORUM）藤茎提取物 | INCI명칭/영문명칭：*POLYGONUM MULTIFLORUM STEM EXRACT* | INCI명칭/영문명칭：*POLYGONUM MULTIFLORUM STEM EXTRACT* | 2025년6월23일 |
| 6 | 「목록」 Ⅰ：06958 | 仙人掌（OPUNTIA DILLENII）花提取物 | INCI명칭/영문명칭：*OPUNTIA DILLENII FLOWER EXTRECT* | INCI명칭/영문명칭：*OPUNTIA DILLENII FLOWER EXTRACT* | 2025년6월23일 |
| 7 | 「목록」 Ⅰ：06959 | 仙人掌（OPUNTIA DILLENII）提取物 | INCI명칭/영문명칭：*OPUNTIA DILLENII EXTRECT* | INCI명칭/영문명칭：*OPUNTIA DILLENII EXTRACT* | 2025년6월23일 |
| 8 | 「목록」 Ⅰ：04696 | 秘鲁香树（MYROXYLON PEREIRAE）油 | 비고: 「화장품안전기술규범」 사용금지 성분 | 비고 내용 삭제 | 2025년6월23일 |
| 9 | 「목록」 Ⅰ：08970 | 苄氯酚 | 비고: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의 요구사항에 따라 사용한다 | 비고: 「화장품안전기술규범」 사용금지 원료 | 2025년6월23일 |
| 10 | 「목록」 Ⅱ：1 | N-乙酰神经氨酸 | — | 신규 추가 | 2025년6월23일 |
| 11 | 「목록」 Ⅱ：2 | β-丙氨酰羟脯氨酰二氨基丁酸苄胺 | — | 신규 추가 | 2025년6월23일 |
| 12 | 「목록」 Ⅰ：说明 | — | 1. 본 목록은 중국 국경 내에서 생산, 판매된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를 객관적으로 수록한 것이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본 목록에 수록된 원료의 안전성에 대헤 체계적으로 평가를 진행한 것은 아니며, 화장품 허가인, 등록인이 본 목록에 수록된 원료를 사용할 때 국가 관련 법률, 법규, 강제성 국가표준 및 기술규범의 관련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제품 품질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목록에 수록된 원료가 이미 화장품 사용금지 성분, 사용제한 성분 또는 사용가능한 성분으로 등재된 경우, 화장품 허가인, 등록인은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의 규정에 따라 법률, 법규, 강제성 국가표준 및 기술규범 관련 요구에 부합하는 원료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3. 본 목록에 수록된 원료의 표준 중문명칭 및 INCI (International Nomenclature Cosmetic Ingredietn)명칭/영문명칭은 "국제화장품원료표준중문명칭목록(2010년판)"및 미국 The Personal Care Products Council(PCPC)에서 편찬한 “International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 and Handbook(2018년판)”을 참고하여 동일 원료가 다른 버전의 INCI명칭을 사용한 것은 사용 시 설명해야 한다. 목록 "INCI명칭/영문명칭"란에서 기울임꼴은 영문명칭을 가리킨다. 4. 본 목록에 원료명칭이 "○○식물추출물"의 형식으로 기재된 것은 원칙적으로 해당 식물의 전초 및 그 추출물이 모두 기사용 원료임을 의미하고, 사용 시 그 구체 사용 부위를 명시해야 한다. 원료명칭이 "○○식물꽃/잎/줄기추출물" 또는 "○○식물꽃/잎/넝쿨추출물"의 형식으로 기재된 것은 원칙적으로 해당 식물의 지상 부분 및 그 추출물이 모두 기사용 원료임을 의미하고, 사용 시 그 구체 사용 부위를 명시해야 한다. 5. 중문명칭 란에 "\*"을 표기한 원료는 특정 유형 원료의 총칭이고, 사용 시 구체 원료 명칭을 명시해야 하며, 사용한 구체적 원료가 본 목록에 수록되지 않은 경우 구체적 원료가 이미 중국에서 허가 또는 등록한 제품에 사용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류는 원료 제조사에서 발행한 구체적 원료의 설명 및 기업에서 해당 원료를 구입한 구매 증빙자료, 해당 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허가/등록 정보, 처방 및 생산 시 원료 투입기록 등이 포함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6. 중문명칭 란에 "\*\*"을 표기한 원료는 그 명칭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동식물 기원이 불분명한 것으로, 사용 시 규범적인 구체 원료명칭을 표기하고, 해당 원료가 중국에서 이미 허가를 취득하거나 등록된 제품에 사용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류는 원료 제조사에서 발행한 구체적 원료의 설명 및 기업에서 해당 원료를 구입한 구매 증빙자료, 해당 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허가/등록 정보, 처방 및 생산 시 원료 투입기록 등이 포함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7. 1개 순번에 2개의 명칭을 나열한 것은 동일 원료임을 의미하고, 사용 시 INCI 수록 명칭 또는 표준 중문명칭 명명원칙에 따라 명명된 식물원료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과거에 사용된 명칭"이라 표기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8. 본 목록에 명시된 원료 최고 역사 사용량은 화장품 안전성평가보고서(간소화 버전)의 증거 유형으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참고할 수 있고, 화장품 허가인, 등록인은 제품 유형과 결합하여 원료 최고 역사 사용량을 정확히 사용해야 하며, 씻어내지 않는 제품의 최고 역사 사용량 정보만 있는 것은 씻어내는 제품은 씻어내지 않는 제품의 정보를 참조하여 사용할 수 있다.9. 목록에 최고 역사 사용량을 제공하지 않은 원료의 경우 화장품 허가인, 등록인은 “화장품안전성평가기술지침”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자료를 평가 근거로 제공하거나 위해평가 절차에 따라 안전성 위해 평가를 진행하여 원료의 사용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 1. 「기사용화장품원료목록」은 Ⅰ과 Ⅱ 두 가지 목록으로 나누어 관리된다. 그중 「기사용화장품원료목록」 Ⅰ은 중국 국경 내에서 생산·판매된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를 객관적으로 수록한 것이다. 화장품 허가인, 등록인이 본 목록에 수록된 원료를 사용할 경우 국가의 관련 법률·법규, 강제성 국가표준 및 기술규범의 관련 요구를 준수해야 하며, 제품 품질안전에 대해 주체적 책임을 져야 한다.2. 본 목록에 수록된 원료가 이미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사용제한 원료 또는 준용 원료로 관리되는 경우, 화장품 허가인, 등록인은 강제성 국가표준 및 기술규범의 규정에 따라 해당 원료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3. 본 목록의 「INCI 명칭/영문명칭」란에서 기울임꼴로 표기된 것은 영문명칭을 나타낸다.4. 「기사용화장품원료목록」Ⅰ에서 원료명칭이 「○○식물추출물」의 형식으로 기재된 것은 원칙적으로 해당 식물의 전초 및 그 추출물이 모두 기사용 원료임을 의미하며, 사용 시 구체적인 사용 부위를 명시해야 한다. 원료명칭이 「○○식물꽃/잎/줄기추출물」 또는 「○○식물꽃/잎/넝쿨추출물」 형식으로 기재된 것은 원칙적으로 해당 식물의 지상부 및 그 추출물이 모두 기사용 원료임을 의미하며, 사용 시 구체적인 사용 부위를 명시해야 한다.5. 중문명칭란에 「\*」 표시가 있는 원료는 특정 유형 원료의 총칭으로, 사용 시 구체적인 원료의 명칭을 명시해야 한다. 사용된 구체적인 원료가 본 목록에 수록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원료가 이미 중국 내에서 허가 또는 등록된 제품에 사용되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원료 제조사가 발행한 구체적 원료의 설명, 기업의 해당 원료 구입 영수증, 원료가 사용된 제품의 허가/등록 정보, 처방 및 생산투입 기록 등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6. 중문명칭란에 「\*\*」 표시가 있는 원료는 그 명칭이 규범화되지 않았거나 동식물 기원이 명확하지 않은 원료이다. 사용 시 규범화된 구체적 원료 명칭을 명시하고, 해당 원료가 이미 중국 내에서 허가 또는 등록된 제품에 사용되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원료 제조사가 발행한 구체적 원료의 설명, 기업의 해당 원료 구입 영수증, 원료가 사용된 제품의 허가/등록 정보, 처방 및 생산투입 기록 등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7. 한 개의 순번에 두 개의 명칭이 나열된 것은 동일한 원료임을 의미한다. 사용 시 INCI에 수록된 명칭 또는 중문명칭 명명 원칙에 따라 명명된 식물 원료 명칭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하며, 「과거에 사용된 명칭」으로 이미 표기된 명칭의 사용은 권장하지 않는다. | 2025년6월23일 |
| 13 | 「목록」 Ⅰ | — | 항목: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최고 역사 사용량(%),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 최고 역사 사용량(%) | 삭제된 항목 | 2025년6월23일 |
| 14 | 「목록」 Ⅰ：00042、00043、01777、01778、02311、02705、03022、03122、03339、04678、05044、05045、05046、05047、05302、06776、07737 | — | 비고: 「화장품안전기술규범」 사용금지 성분으로 조정 예정 | 비고: 「화장품안전기술규범」 사용금지 원료 | 2025년6월23일 |
| 15 | 「목록」 Ⅰ：00019、00020、00021、00022、00030、00045、00046、00071、00077、00397、00407、00408、00415、00416、02018、02099、03088、03217、03271、03300、04328、04535、05218、05219、05220、05221、05222、05428、06149、06242、06815、07385、08263、08667 | — | 비고: 「화장품안전기술규범」 사용금지 성분 | 비고: 「화장품안전기술규범」사용금지 원료 | 2025년6월23일 |